

“폭발손해”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9년 11월 20일 신청인 L과 피신청인 D사이 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 보험목적: 표고버섯, 가재도구 및 건물
- 보험금액: 표고버섯-4억원
가재도구-3천만원
건물-7천만원
- 보험기간: 1989년 11월 20일 ~ 1990년 11월 20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90년 2월 10일 신청인소유의 주택겸 창고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인 건물, 집기비품 및 표고버섯이 소실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서로의 이견

신청인은 본인의 건물내에 LP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 표고버섯 약 45톤400kg이 소실되어 6억9천5백95만3천6백2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표고버섯 중 60%가 폭발로 비산되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에 산정하지 않고 40%만 인정하여 2억8천45만2천8백23원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표고버섯의 손해가 45톤400kg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장부라고 제출한 자료는 통상의 장부기재방법에 어긋

난 메모노트로써 1988년과 1989년에는 매출기록이 전혀없고, 1990년 1월 8일부터 1990년 2월 9일까지 약1개월간의 매출만이 기록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바, K손해사정(주)에서 사정한 표고버섯 손해액 2억9천1백41만2천3백원을 보험금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3. 심의

본건을 심의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각 하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8등분하여 실사함과 동시에 수용장소 및 적치위치별로 표고버섯의 잔존 물건분을 채취하여 한국삼공실험실에서 수분분석 등을 한 후 동 실험분석을 통해 산정한 화재손해 수량을 기준으로 손해액 2억9천1백41만2천3백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손해액산정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손해액 산정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동 손해액은 일응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아울러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5항에서는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책임이 없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폭발로 비산된 표고버섯을 손해액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신청인은 표고버섯 45톤 400kg중 60%에 해당하는 양이 폭발로 인하여 불붙은 상태에서 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폭발로 비산된 수량은 건물의 창호, 벽체 등이 막혀 있었으므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더라도 극히 미소한 수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량이 비산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손해사정(주)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폭발로 인한 버섯의 순간적인 연소 및 화염은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맺는 글

폭발(Explosion)을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폭음을 수반하는 파괴 또는 화재를 수반하는 예기치않은 현상을 자칭한다. 통상 폭발의 경우 압력의 급격한 상승현상으로 인하여 폭음을 수반하거나 연소작용이 나타나며, 파열 현상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폭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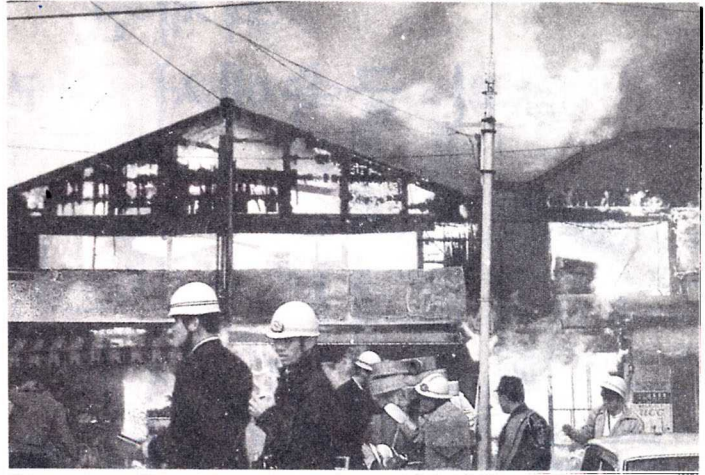
졌다.

동 폭발위험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담보하지 않고 추가보험료납입을 조건으로 특약(Extended Coverage Endorsement)을 첨부하여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주요각국의 보편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폭발과 관련한 손해는 첫째, 유리창 파손과 같이 폭발자체만의 결과에 의한 경우. 둘째, 폭발이 일어난 후 폭발을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셋째,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를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4조 5항에서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폭발 손해는 면책이 되는 것이다. 다만 동 조 단서에서는 폭발의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폭발이전의 화재손해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고액물건 등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국 Fire Offices' Committee (Foreign)에서 제정한 Uniform Policy Conditions(foreign) 제 7조 h항에서도 폭발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고 있지 않다.(Any loss or



damage occasioned by or through or in consequence of explosion)

위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차이점은 국문약관에서는 폭발의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이 되는데 반하여, 영문약관에서는 그문안만 보아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폭발이전의 화재손해는 담보가 되겠으나 폭발손해는 물론 폭발의 결과로 인한 화재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점에 있는 것으로서, 이점에 있어서 국문약관의 보상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영문약관 7조 h항의 단서규정에서는 가스를 생산하지 않거나 또는 가스공장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건물내에서 조명 또는 가스용기사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 보험증권의 해석상 화재에 의한 손해로 보고 있어 (but loss or damage by explosion of gas used for illuminating or domestic purposes in which gas is not generated and which does not form part of any gas works,

will be deemed to be loss fire within the meaning of this policy) 가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폭발은 특약없이도 담보되는 것이다. 국문약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계보험시장의 저변확대 및 보험서비스 확대제공 측면에서 적정요율수준유지를 전제로 하여 주택화재물건 등에 대하여는 가사용 가스의 폭발은 담보해 주도록 영문약관과 같은 폭발담보소항을 추가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건은 LP가스 폭발이 있은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험결과나 증거자료에 의하면 표고버섯이 가스폭발로 불이 붙은 상태에서 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스폭발로 수용건물을 벗어난 일부표고버섯에 대하여는 일종의 폭발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손해사정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폭발에 의한 화재로 소실된 수용건물내의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을 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아 본 건을 각하처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㉞)